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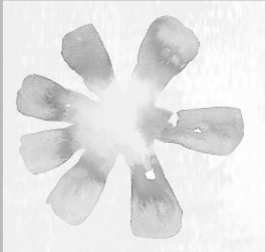
일시 2018년 7월 5일(목)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11층) 인권교육센터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 일시 : 2018년 7월 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11층) 인권교육센터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사 회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4:10~14:30 (20분)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 내용	양홍석(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변호사)
14:30~14:50 (20분)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및 향후 계획	마경석(경찰청 정보1과 과장)
14:50~15:10 (10분)	휴식	
15:10~15:30 (20분)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오민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15:30~15:50 (20분)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방향	박병욱(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5:50~16:35 (45분)	토 론	량희(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6:35~16:55 (20분)	종합토론 및 정리	조영선(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차 례

CONTENTS

[발제]

-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 내용 _ 7
양홍석(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변호사)
-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및 향후 계획 _ 21
마경석(경찰청 정보1과 과장)
-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_ 27
오민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 _ 43
박병욱(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 정보경찰 개혁 권고의 한계와 문제점 _ 55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 정보경찰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문 _ 66
장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경찰 개혁방안 _ 74
오병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 내용

양 홍 석 변호사
(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주요내용

양홍석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1. 정보경찰개혁소위 활동경과

- 2018. 1. 17. 경찰개혁위원회 내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 구성
(소위원장 서보학, 위원 양영철, 최강욱, 오창익, 양홍석)
- 소위회의 13회, 간담회 2회 개최
- 2018. 4. 17. 정보경찰개혁 권고안 확정

2. 정보경찰개혁권고안 주요내용

가. 치안정보 개념 폐기

① 상황인식

- 경찰법 제3조 제4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국가경찰의 임무,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해두었으나 치안정보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고 치안정보를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찰의 정보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치안정보의 불확정성, 모호성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수집, 예방적 정보수집으로 이어지는 폐해가 있었음
- 그동안 경찰의 정보활동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었고, 경찰작용과 무관한 정책정보의 생산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치안정보’ 개념을 그대로 두고선 정보활동에 대한 개혁이 불가능함

② 개선방향

- “치안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찾으려고 했으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함(ex. 경찰정보, 국민안정정보)
-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기로 함
-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시 해석·적용과정에서의 남용가능성 있고, “예방”이 자칫 경찰활동의 확장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음
 - ‘공공안녕’, ‘위협성’, ‘예방’, ‘대응’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외연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다만, 경찰 스스로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계기로 치안정보 개념 폐기 및 새로운 경찰정보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만큼 세심한 연구가 필요함

나. 경찰청 정보기능 재편(정보국 폐지?)

① 상황인식

-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정보국, 경찰서 정보과로 이어지는 정보기능의 활동이 밀행성을 강조한 나머지 내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경찰의 다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배포면에서도 부족했음
- 정보경찰의 직무수행이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지방청 3곳, 경찰서 9곳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음(추후 정밀한 직무분석을 시행하기로 했음)

경찰청	내근	서무, 기획, 집시법, 채증, 신원조사, 정책보고서, 치안정책, 상황관리
	외근	보고서, SRI, 대외협력, 집회관리
지방청	내근	신원조사, 내부시책, 정책자료, SRI, 상황관리, 채증
	외근	대외협력, 보고서, 집회관리, SRI
경찰서	내근	보고서, 신원조사, 집회접수·자문위 운영, 채증, SRI, 정책보고
	외근	보고서, 집회관리, 대외협력, SRI조치

② 개선방향

- **[대외협력]** 정보경찰의 대외협력 업무는 경찰이 수행할 필요는 있으나 반드시 정보국을 유지하면서 정보국 산하에 정보관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서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 경찰청 정보국을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주된 기능으로 재편하고, 이에 맞춰 기존 정보경찰의 대외협력업무는 경찰의 다른 기능으로 이관하도록 함
- **[집회·시위]** 집회·시위 관련 업무 역시 경비기능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정보국의 집회·시위 관련 업무 역시 경찰의 다른 기능으로 이관하도록 함
 - 2018년 내에 업무협의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는 조정·이관을 마무리하기로 함
- **[정책정보, SRI]** 정부의 정책수립·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여론수렴 등을 위한 정책정보, SRI를 과거 정부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경찰청이 수행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보 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청의 정책정보 수집·분석 등이 중단될 경우 정부의 기능수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정책정보, SRI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부처로 이관할 것을 전제로 현 정부 임기내에 개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권고함
 - 실제 정책정보, SRI는 청와대, 정부부처 등이 수요자이고, 경찰청의 경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정보활동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은 경찰청 등의 우려로 실제 권고안 성안과정에서 현 정부 임기내 조정으로 후퇴했음
 - 정책정보, SRI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은 2018년 내에 업무협의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해서 이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음
 -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2호)는 즉각 폐지하도록 하였으나,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를 잠정적으로 유지함으로 인해 제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도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신원조사]** 신원조사업무는 경찰의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등 부처로 이관하는 적절하다고 보고 타부처와 협의해서 이관하도록 함. 이 신원조사 업무를 경찰이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세평수집, 부당한 압력행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함

- **[기능별 정보활동]** 경찰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는 정보활동이 필요하므로 경찰의 각 기능((생활안전, 수사, 사이버안전, 교통, 경비, 보안, 외사, 공공안녕 등)별 정보활동으로 분산하도록 하고, 각 기능별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적법성, 적정성 통제를 받도록 함
- **[인력재배치]** 정보경찰의 비대화하는 불필요한 정보활동으로 이어지는 물적 토대가 되므로 전체적으로 정보경찰 인력을 축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심층 조직진단,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경찰 인력을 대폭 축소하도록 함

다. 정보활동 개선

① 상황인식

-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671호) 제14조에 규정한 정보국의 업무는 치안정보개념의 폐기, 정보국 재편방향에 따른 전면 개편이 필요함
- 경찰의 정보활동 중 각 기능별로 분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분산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타부처로 이관하거나 중단할 필요 있음
- 경찰의 정보활동이 민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인 '사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중단할 필요 있음

② 개선방향

-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에 정하지 않은 파견과 상시출입 등의 방법으로 하는 동향 파악, 사찰은 즉각 중단하도록 함
- 정보경찰관의 기관 출입은 법령이 규정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기관 등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런 불가피한 경우라도, 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활동은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
- 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범위를 벗어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라. 정보활동의 원칙

① 상황인식

- 경찰의 정보활동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없이 이루어졌고, 정보활동의 결과물 역시 정보국 내 소수의 경찰관이 독점함으로써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했음
- 정보활동의 비밀주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사후통제도 불가능함

② 개선방향

- 정보수집활동 시 신분과 정보수집목적 공개하도록 하였음
- 현재 72시간 내에 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를 열람 후 파기함으로써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열람 후 파기 원칙을 폐기하고, 정보활동의 결과물을 보관하도록 함
 - 정보축적의 위험을 고려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정보에 대해선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접근이력을 남기도록 함
- 정보실명제 도입
 - 정보수집·분석·배포과정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해서 정보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 정보이력제 도입
 -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는 ‘정보이력제’를 도입해 정보활동의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현재 경찰 내에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중에는 법령상 근거없이 훈령에 기초한 것이 많은데, 정보의 수집·축적은 그 자체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숨기는 비밀시스템의 구축·운영도 금지함

3.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 및 경찰청 이행계획(전문)

연번	25	권고명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일	2018년 4월 27일	소관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
<p>I. 권고 취지</p> <p>경찰은 그동안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정보수집의 대상은 누구이며, 수집된 정보는 어떤 검증을 거치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보경찰이 어떤 정보물을 작성하고, 어떤 판단과정을 거쳐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경찰이 작성한 존안자료를 활용하여 정권과 경찰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없는지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p> <p>정보경찰은 비밀리에 스스로와 정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통치를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구시대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p> <p>경찰의 입장에서도 정보경찰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고 일상적 갈등구조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수사구조개혁 등 일련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이 ‘경찰 공룡론’의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회를 통한 감시나 시민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불필요한 오해는 불식시켜야 한다. 그것은 정보경찰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만으로 가능하다.</p> <p>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적 근거부터 명확하지 않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한 법률 근거는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밖에 없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이 같은 법률 규정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법률이 규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이 정보활동의 수권 규정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p> <p>실제로 정보경찰은 정치적 반대자나 정치권력이 주목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찰을 정보활동이라며 강변해왔다. 또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정치·경제·사회·학원·문화·종교 등 각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이 수집한 각종 정보에 대한 안장치는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p>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무릇 경찰의 활동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인권수호자로서 적극적인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국민적, 헌법적,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경찰 활동은 당연히 헌법정신에 따라, ‘법의 지배’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처럼 모호한 직무규정이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 보관 등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호한 규정을 경찰만능주의적 정보활동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경찰의 정보활동은 공개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경찰의 정보활동 분야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 주목하며, 경찰의 정보활동을 개혁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II. 권고 내용

1.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한다. 이러한 정보활동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 ① 관련법에 규정된 ‘치안정보’란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 축적, 분석, 활용 등의 근거가 되었던 만큼 폐기한다. 현행 ‘치안정보’ 개념은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한다. ‘공공안녕’, ‘위험성’, ‘예방’, ‘대응’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외연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②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의 각 기능(생활안전, 수사, 사이버안전, 교통, 경비, 보안, 외사, 공공안녕 등)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에서만 수행한다.
 - ③ 경찰의 각 기능별 정보활동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 감사를 받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를 받고 사후 공개시 시민 감시기구의 통제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경찰은 헌법질서에 반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정보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한다.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에 정하지 않은 파견과 상시출입 등의 방법으로 하는 동향 파악, 사찰은 즉각 중단하며, 기구와 인력은 이에 맞게 대폭 축소한다.

- ① 현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671호) 제14조(정보국)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 ㉠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2호)는 즉각 폐지한다.
또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에 대한 정보경찰관의 상시 출입과 경찰직무와 무관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출입을 즉각 중단한다. 정보경찰관의 기관 출입은 법령이 규정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기관 등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같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활동은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 ㉡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는 정부 차원의 정책정보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의 이관·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진행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정책정보에 대한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 조정을 진행한다.
 - ㉢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4호) 업무를 조정하여 경비 등 다른 부서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5호)는 정부 차원의 협의·조정을 통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로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 ② 현재 정보기능의 업무 중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대외협력과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는 경찰청의 다른 부서로 이관을 추진한다.
- ③ 경찰청 정보국은 그동안의 파행과 시민의 인권보장에 소홀하였다는 반성에 기초해 정보국의 명칭, 활동, 조직 등을 재편한다.
- ④ 현행 정보경찰에 대한 심층적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경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정보경찰 인력을 대폭 축소한다. 축소된 인력은 민생경찰분야에 재배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력 축소는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정보경찰의 인력감축은 새로운 국가정보체계의 구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경찰청은 정보경찰 인력의 축소를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되, 현장 경찰관들의 원활한 전환배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경찰의 정보활동은 개별 기능별 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규정에는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필요성이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이나 치안 정보 또는 정책정보라는 이유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과 동향파악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점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중복 출입하면 안 된다.
- ③ 정보경찰이 출입이 금지된 기관을 출입하거나, 그동안 사찰 논란이나 정치개입 등의 우려를 야기해 온 무분별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 ④ 정보경찰은 개인이나 단체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사찰, 동향 파악 등의 정보활동을 어떤 경우에도 진행할 수 없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 상 직무수행 외 사찰 활동도 일체 중단한다.
- ⑤ 정보경찰은 물론,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종합·작성·배포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 ⑥ 정보경찰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하고 이를 조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⑦ 정보경찰은 다른 부서의 경찰관 등의 동향 파악, 사찰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⑧ 정보경찰의 '전무' '부사장' 등 직무와 무관한 허위 직함 사용을 금지한다.
- ⑨ 비공식적으로 '분실' 또는 '별관'으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 독립청사 사용을 지양한다. 별관의 정보경찰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한다.

4.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① 경찰관이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공개하고,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안보 및 시민의 생명에 긴박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정보수집 활동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② 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관한다. 다만, 정보축적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이 지나 보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정보물에 대한 접근 이력을 남기는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 ③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정보 이력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보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성,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④ 경찰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그 근거, 절차와 방식 및 통제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내·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금지한다.
- ⑤ 정보경찰은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 계획〉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한다.
2. 향후 일정

〈정보국 기능 재편〉

- ‘치안정보’ 용어 변경·직무 범위 신설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8년 11월 15일
- 경찰청 감사관실 정기사무 감사 수감방안 마련 ⇨ ’18. 8월 15일
- ‘경찰위원회 실질적 통제(기획조정)·시민통제(수사)’는 해당 기능의 권고안 이행과 연계하여 이행 방안 마련

〈민간시설 출입 중지, 기구·인력 축소〉

- 정당·언론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 중단은 즉시 시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출입 지침 마련 ⇨ ’18.10월 15일
-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은 ’18.10월 15일 완료로 목표로 추진하고, 그 결과는 국가정보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인력 감축, 명칭·활동·조직 등 재편, 대외협력·집회신고 관련 업무 이관’ 등에 반영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2호(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삭제하고, 경직법 개정(직무범위 규정 신설)과 연계하여 “공공 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로 재정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및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5호(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18년 11월 15일 관계부처(부서) 업무 협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정·이관
단,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현 정부 임기내,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는 ’19년 1월 15일 조정·이관 추진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활동 수권 규정’·‘권한 남용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8년 限
- ‘민간기관 상시출입 금지와 공공기관 출입 요건’ 등 구체적인 정보활동 기준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정보활동 규칙’(경찰청 훈령)으로 제정 ⇨ 18년 限
- 별관 정보경찰 사무실 본관 이전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을 수립(’18년 限), 본관 청사 확보 경과에 따라 단계적 이행

〈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 ‘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 ’18년 限
- ‘정보실명제·이력제’ 등을 포함한 ‘정보기록물 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견문 규칙 개정 추진 ⇨ ’18년 限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및 향후 계획

마 경 석 과장
(경찰청 정보1과)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정보경찰 개혁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 및 향후 계획

마경석 과장(경찰청 정보1과)

권고안 이행계획

- ① 정보국 기능 재편
- ② 민간시설 출입 중지, 기구·인력 축소
- ③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④ 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경찰청

1 정보국 기능 재편

- ‘치안정보’ 용어 변경·직무 범위 신설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8년限
- 경찰청 감사관실 정기사무 감사 수감방안 마련 ⇒ ’18. 8월限
- ‘경찰위원회 실질적 통제(기획조정)·시민통제(수사)’는 해당 기능의 권고안 이행과 연계하여 이행 방안 마련

2 민간시설 출입 중지, 기구·인력 축소

- 정당·언론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 중단은 즉시 시행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출입 지침 마련 ⇒ ’18.10월限
-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은 ’18.10월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그 결과는 국가정보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인력 감축, 명칭·활동·조직 등 재편, 대외협력·집회신고 관련 업무 이관’ 등에 반영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2호(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삭제하고, 경직법 개정(직무범위 규정 신설)과 연계하여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로 재정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및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5호(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18년限 관계부처(부서) 업무 협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정·이관
단, 3호(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는 현 정부 임기내,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는 ’19년限 조정·이관 추진

3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활동 수권 규정'·'권한 남용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8년 限
- '민간기관 상시출입 금지와 공공기관 출입 요건' 등 구체적인 정보활동 기준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정보활동 규칙'(경찰청 훈령)으로 제정 ⇨ 18년 限
- 별관 정보경찰 사무실 본관 이전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을 수립('18년 限), 본관 청사 확보 경과에 따라 단계적 이행

4 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 '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 '18년 限
- '정보실명제·이력제' 등을 포함한 '정보기록물 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견문 규칙 개정 추진 ⇨ '18년 限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들어가며

경찰개혁위원회는 2018. 4. 27.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정보국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협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할 것, ② 정보국의 명칭을 개정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직무범위를 개선하며 정책 정보, 신원조사 업무는 이관, 조정을 추진하고 정보인력의 축소,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으로 정보조직을 개편할 것, ③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④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위 권고안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정보경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보경찰의 활동은 경찰에 대한 독립적이고 외부적인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활용에 관한 폭로성 기사가 보도되거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보수집 과정이 드러나면서 확인되어야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보경찰의 현황과 그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2. 정보경찰의 역할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가. 정보경찰의 연혁

정보경찰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정보경찰의 역할과 그 업무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통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에서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¹⁾.

1) 이하 관련 내용은 신성식,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법정리뷰 제28집 1호(2011. 6.) 참조

- 1907년: 일본의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 제정 및 경찰권 장악. 경무통감부 기밀과 고등경찰 계에서 사찰에 관한 사항 취급.
- 1910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과에서 사찰에 관한 사항 취급
- 1940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소속보안과에서 사찰에 관한 사항 취급(훈령 제5호)
- 1945년: 경무국 설치 후 치안업무 담당
- 1950년: ‘정보수사과’로 개편(대통령령 제380호)
- 1953년: 정보수사과를 수사지도과와 특수정보과로 분리 및 개편(대통령령 제804호)
- 1960년: 특수정보과를 정보과로 개칭. 각 시도경찰국의 사찰과는 정보과로, 각 경찰서의 사찰계는 정보계로 개칭.
- 1991년: 5월 경찰법 제정, 7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의 직제, 경찰위원회 규정을 공포하면서 정보국 설치. 이후 정보국 및 정보과 직제 유지.

나. 관련 현행 법령

「경찰법(법률 제15566호 일부개정 2018. 4. 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0, 2018.4.17]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13조 (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局) 또는 부(部) 및 과(課)로 한다.

② 경찰청장·차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立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 제28760호 일부개정 2018. 3. 30.)」

제4조 하부조직 ①경찰청에 생활안전국·수사국·사이버안전국·교통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을 둔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0호 일부개정 2018. 03. 30.)」

제2장 경찰청

제11조 (정보국에 두는 과)

①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7, 1999.12.28]

1. 정보경찰(情報警察)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4.12.31]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삭제 [2004.12.31]

⑤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⑥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6장 지방경찰관서의 과단위 기구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31조 (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13.5.8]

1. 정책정보 및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삭제 [2013.5.8]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경제·노동·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2013.5.8]

제3절 기타 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45조 (정보과)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및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다. 문제점

정보경찰에 관한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정보경찰(정보국 혹은 정보과 소속 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보국 내지 정보과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지, 소속 경찰이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규정에 따르면 정보국 내지 정보과 소속 경찰의 활동은 크게 ‘치안정보 관련 업무’로,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된 치안 정보 관련 업무,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된 치안 정보 관련 업무 등으로 분류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정보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정보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 즉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크다. 예컨대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은 해당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정보 수집을 이유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가 인지할 수 없고 그 과정을 통제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찰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3. 정보경찰의 문제점이 확인된 사례들

최근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관련 수사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현직 간부가 소환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보도되었다²⁾. 노동조합의 동향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삼성 측에 전달하였다는 혐의였는데, 이와 같이 정부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도 정보경찰의 활동이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야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즉, 정보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한편, 해당 개인 혹은 단체로 하여금 감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자기검열에 이르게 하여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경찰의 사찰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거나 항의성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오랜 시간 이에 대해 대응해왔다.

앞서 확인한 정보경찰의 법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언론보도나 관계자의 폭로, 혹은 관련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실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상, 확인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의 정치적 활용에 기여

- 2018. 1. 25.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압수수색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확보. 그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사찰정보가 담긴 60여건의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³⁾.
- 해당문건에는, 2008. 11.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의 개인일정 관련 보고를 비롯하여,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히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방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이 포함됨⁴⁾.

2) 2018. 6. 22.자 KBS 보도 “[단독] 삼성 돈 받고 노조 정보 제공? 경찰 간부 수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8452&ref=D>)

3) 2018. 3. 22.자 한겨레 보도 [단독] MB, 재임초부터 '노무현 깨알 사찰' 경찰보고 받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180.html)

4) 2018. 3. 20.자 연합뉴스 보도 ‘영포빌딩 MB 靑문건 3천여건…국정원·경찰 정치공작 정황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0/0200000000AKR20180320052000004.HTML?input=1179m>)

- 뿐만 아니라 2010. 7.경 재보선을 앞두고 재보선 지역별 분위기를 파악·분석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는 한편,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6개 지역 교육감들의 동향을 분석하여 보고함⁵⁾.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의 동향을 감시하고 보수 성향 후보의 선거 지원을 위한 정보활동에 나선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었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됨. 이후 해당 경찰이 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청 정보2과 직원이 ‘좌파후보는 어떤 선거전략을 가지고 있고 좌파 세력들이 좌파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9개 지방경찰청 정보과 담당경찰관들에게 발송했다가 해당 송수신 이메일을 모두 삭제하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 한편 2011-2012년, 소위 경찰의 ‘덧글 등 여론공작’에 보안국 뿐만 아니라 수사, 정보, 공보 등 분과들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남.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현재까지 수사결과,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정보부서 등 소속 경찰관 95명이 덧글 작업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됨⁶⁾. 정보 수집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를 덧글 공작에도 활용한 문제 발생⁷⁾.
- 2011년 초-2013년, 점조직 형태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 진행.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협조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대응해옴⁸⁾.
- 뿐만 아니라, 2011년 당시 4대강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대학 교수들에게 ‘학교 담당’ 경찰이 전화하여 안부를 묻는 방식으로 자주 동향을 파악했다는 사실도 일부 확인되어,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입장을 가진 학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됨⁹⁾.

5) 2018. 5. 23.자 한겨레 보도 “MB 청와대, 경찰한테 ‘선거판세·교육감 사찰’ 보고 받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5787.html>)

6) 2018. 6. 21.자 세계일보 기사 “MB 국정원 前 국장 ‘정치인 사찰 혐의 인정’”
(<http://www.segye.com/newsView/20180621005506>)

7) 2018. 3. 16.자 한겨레 보도 [단독] 경찰, 2012년 덧글공작에 수사·정보 등 주요부서까지 총동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6361.html)

8) 2018. 6. 20.자 국민일보 보도 “[단독] 이명박·박근혜 시절, 경찰이 점조직으로 민간인 비밀 사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8391&code=11121100&cp=du>)

9) 2017. 9. 22.자 오마이뉴스 보도 “[단독] ‘수시로 대학에 전화해 동향 파악’ MB정부, 4대강 반대 학자 사찰 의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2411&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

- 2017. 12. 2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의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 의하면, 블랙리스트 실행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국가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함¹⁰⁾.
- 구체적으로, 2015. 7. 1. 정00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컨텐츠산업과장은 국정원 A간부, B간부와 함께 경찰청 정보국 C경감에게 “어제 영진위 9인위원회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심의결과 지원작품편수를 당초 24편에서 48편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일부 위원 문제 지속제기) 사업구조는 변함없으며, 상영관에서 상영할 경우 지원받는 영화의 풀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위에서 철저히 책임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이에 3분 후 국정원 B간부는 정00 문체부 과장에게 “과장님! 영화단체 지원사업중 인디다큐, 인디포럼 등 이념성이 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라고 묻는 문자를 보냈음. 이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 간부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 진상조사위의 발표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 국정원에 문화예술인 검증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이미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념편향성’인물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찰의 정보를 통해 인물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감시 및 동향 파악

-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가족들이 모인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1일 평균 22명의 사복 정보과 경찰이 배치됨. 당시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 집결지 사복 경찰 인력 내역 및 업무분장,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남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피해 현장의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연락과 협력 등을 통한 실종자 신속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관을 배치 중”이라고 밝혔음. 사복경찰이 생산한 자료에 대해 “열람 후 파기라는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에 의해 파기해 보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¹¹⁾.

10) 2017. 12. 20.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 (중간결과 브리핑)

11) 2014. 5. 2.자 미디어오늘 보도 “진도체육관·팽목항에 매일 22명 사복경찰 배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no=116357>)

- 2014년 세월호 희생자 빈소가 차려진 안산지역 장례식장에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8명이 배치됨. 이들은 모두 사복 차림으로 장례식장 10여 곳을 한 사람당 2~3곳씩 담당했음. 이들은 세월호 사건 발생 3일째인 4월 18일부터 현장에 배치됐는데, 전날 첫 시신 발견 이후 안산으로 시신 운구가 잇따랐던 시점이었음¹²⁾. 이미 안산단원경찰서 등 경기경찰청 소속 정보관 2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안산시청 등 소속 직원들도 현장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해경 소속 정보관이 ‘장례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 배치되었다는 것이 당시 평택해경의 입장이었음.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편(2014. 4. 26. 방송) 촬영 당시 제작진이 피해자 가족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 이를 몰래 녹음하던 남성을 발견하고 소속을 묻자 해당 남성은 경찰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¹³⁾, 해양경찰 신분이 확인되었으며 녹취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돌발행동이라고 함.
- 2014. 5. 19. 유가족 30여 명이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 중 전북 고창 고인돌 휴게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2명을 적발함¹⁴⁾. 이에 대해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 정보과장은 경찰 업무 관련 협조할 일이 있을까봐 동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유가족들은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음. 당시 경기청장이 사과하였으나 유가족들이 “34일 동안 사복 경찰이 유가족 주위에서 정보활동을 하면서 작성한 보고서 열람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대한민국 경찰이 생긴 이래 공개한 적이 없다. 국회가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거부함¹⁵⁾.

당시 안산단원서 서장이었던 구모 총경은 2014. 12.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를 이유로 근정포장을 받음. 세월호 공적 서훈자 총 16인 중 구조활동 후 귀환하다 헬기 추락으로 숨진 5명을 제외한 11인의 사유는 ‘세월호 완벽 상황유지’였음. 안산단원서 소속이었던 조모 경감은 “세월호 참사 상황 관련 정보활동 및 상황 완벽관리”를 이유로 훈장을 수여받음.¹⁶⁾

12) 2014. 5. 2.자 뉴시스 보도 “[세월호 참사]사고 수습 전념할 해경이 장례식장에 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02_0012893393&cID=10202)

13) 2014. 4. 27.자 뉴스1 보도 “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침몰 편, 사복 해양경찰 발각”
(<http://news1.kr/articles/1651048>)

14) 2014. 5. 19.자 오마이뉴스 보도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하다 ‘덜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3404)

15) 2014. 5. 20.자 서울경제 보도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 해명하며 한다는 말...”
(<http://v.media.daum.net/v/20140520143120199>)

16) 2016. 10. 12.자 뉴시스 보도 “정부, 세월호유가족 미행 경찰에 근정포장 수여”

- 2016. 9. 2.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3차 청문회에서 공개된 세월호 참사 당시 경찰청의 2014. 4. 22.자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지방청은 향후 경기·안산지역에서 장례·보상으로 인한 대정부 반발·유가족간 갈등이 초래될 것을 대비”한다며 “사망·실종자 가족들의 성향 분석을 위해 직·간접 접촉선 확보 및 강성단체·불순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정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¹⁷⁾. 당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가족은 계속해서 사찰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또 다른 유족은 농성 중 청와대에 민원을 넣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이 자신과 자녀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거론하면서 호명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함¹⁸⁾.

라. 학생회, 사회단체 등의 동향 감시

-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보과 경찰관이 대학의 학내 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어차피 행사가 제대로 열릴 수 없을 것”이라며 회유함.¹⁹⁾ 서강대 학회 ‘비타악티바’는 ‘G20 정상회의에 맞선 대학생 대안 경제포럼’ 개최를 계획했는데, 학교 측이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며 포럼이 열리기로 한 장소의 사용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행사 무산 위기를 겪음. 이후 강의 내용은 그대로 하되 ‘G20 정상회의에 맞선’이라는 표현만 없애자는 학교 측의 타협안을 주최 측에서 받아들이기면서 사태가 진정됨.

당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서강대 총학생회에 전화를 걸어 위 행사에 대하여 물으며 어차피 행사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만남을 제의함. 전화한 경찰관의 성명 등과 통화 당일 업무 일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마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송00이 서강대 총학생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한번 하자’고 제의한 바 있으며 업무일지는 없다”고 밝힘.²⁰⁾

- 2015. 2.경 구로경찰서 소속 정보관이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회장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학교 측에 묻고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여 학원사찰 논란이 벌어졌음²¹⁾. 당시 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2_0014444309&clD=10201)

17) 2016. 9. 2.자 미디어오늘 보도 “경찰, 세월호 가족 ‘사찰’ 보고서 “강성시위 가담자 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no=131945>)

18) 2016. 9. 2.자 뉴시스 보도 “세월호 유족들 ‘통화기록 등 경찰 감시 당하고 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02_0014363608)

19) 2010. 11. 3. 노컷뉴스 보도 “G20에 ‘맞서는’ 대학생 학술제는 안 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177726>)

20) 서울마포경찰서장,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접수번호 1194935), 2010. 11. 15.

당 학생은 알바노조 간부,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당원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도 참여해왔는데, 학교 측에서도 특정 개인의 신상을 정보경찰이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고 함.

- 2010. 6.경 마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양00은 한국여성민우회에 전화를 걸어 6월 2일 한강공원 망원지구 배구장1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민우명랑운동회’의 프로그램 관련 문의를 함. 통화 후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일일정보보고)와 업무일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보고서 등은 없다고 밝힘.²²⁾ 한편 2011. 1.경 마포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강00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전화를 걸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센터 예산 인센티브 차등화 반대 기자회견에 관해 질문함.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관내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여성단체의 ‘인센티브제 전환’ 정책이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현장의 목소리 및 애로사항 등이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 되도록 하고자 전화 문의”했다고 밝힘.²³⁾

마. 기타

1) 지역 골프장 건설 반대대책위원회 주요 인물 리스트 작성

- 홍천경찰서 정보보안과는 2013년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등 방지를 위한 기도회」 정보대책」 제하의 문건을 작성했는데, ‘정보상황보고’ 제하로 홍천군이 홍천구청 앞 노숙천막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사실과 함께 ‘골프장 범대위 및 후손 반발 관련음직임 면밀파악’을 후속 조치로 제시하고 있고, 골프장 반대대책위 주요 인물의 사진과 성명도 실려 있었음.²⁴⁾

2) 촛불집회 참석한 교사의 신원 확인

- 2008. 5.경 수원서부서 정보과 형사 2명이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장 등을 상대로 이 학교 소속 교사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와 신원을 확인했음. 해당교사는 같은달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학교 자율화 계획 철회 등에 대한 연설을 한 바 있음.²⁵⁾ 경기지방경찰청은 “당시 ‘아동안전 지킴이’에 대한 여론 및 실태를 파

21) 2015. 2. 16.자 민중의 소리 보도 “경찰, 학생회 간부 사찰 논란…‘연락처 묻고 만나게 해달라고’”
(<http://www.vop.co.kr/A00000850076.html>)

22) 서울마포경찰서장,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접수번호 1270039), 2011. 2. 9.

23) 서울마포경찰서장,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접수번호 1255461), 2011. 1. 20.

24) 2018. 2. 27.자 페이스북 게시물
(<https://www.facebook.com/seongyul/posts/1887903831283199>)

악하기 위해 교장과 상담하던 중 해당 교사에게 지난달 21일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물었을 뿐”라는 입장을 밝힘.

3) 신고된 행진에서 기자를 사칭하여 채증

- 2015. 1.경 구로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의 행진 현장에서 기자를 사칭하며 무단 채증을 하다 적발됨. 이날 행진은 사전에 집회신고를 했으며 경찰 안내 하에 진행됨.²⁵⁾ 신분을 묻는 질문에 기자라고 답하였으나, 이후 구로경찰서 정보과장이 정보과 직원임을 인정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채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4. 마치며

정보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고 관련 사례들은 계속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실현되지는 않아왔다.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이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정치, 노동, 학원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 수집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에 대해서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 혹은 특정 입장과 다른 의견, 사상을 향유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왔던 것 자체가 정보경찰이 계속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원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한다는 원칙이 가장 절실하게 실현되어야 할 정보경찰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25) 2008. 6. 5.자 경향신문 보도 “경찰 이번엔 ‘촛불집회 연설 교사’ 조사 물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051352132)

26) 2015. 1. 8.자 미디어오늘 보도 “[단독] 경찰 정보과 직원 ‘기자 사칭’ 불법 채증하다 딱 걸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03>)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

박병욱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현행 경찰청 정보국 정보활동의 침해성과 법률유보

△ 전통적으로 국가작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즉, 침해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

최근에는 본질성 이론에 따라 기본권적 관련성이 있고, 이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의 필요성, 그리고 상충하는 이익간의 조정이 필요할수록 법률에 규정되어 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음.²⁷⁾

언론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찰의 정보활동은 감시나 미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사자의 정보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수집되는 것이 대부분

△ 예컨대, 2018. 1. 25.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권초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사찰정보 60건 중²⁸⁾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 라운딩한 내용 사찰,
- 노무현 대통령이 논산 젓갈시장 방문후 노사모 회원들을 만나 정치적 결집을 시도하였다는 내용,
- 국가인원위원회 위원들이 좌편향되었다며 위원들의 성향을 보수·중도·진보로 분석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 2010.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국 16개 지역 교육감 동향분석²⁹⁾

등은 개인의 동정에 대한 사찰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전형적인 기본권 침해적인 경찰정보활동이다.

27) 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 헌마 882.

28) MB, 재임초부터 '노무현 깨알 사찰' 경찰보고 받았다(한겨레신문 2018.3.22. 자)

29) MB 청와대, 경찰한테 '선거판세·교육감 사찰' 보고받았다(한겨레신문 2018.5.23. 자)

△ 심지어

-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³⁰⁾

와 같은 경찰정보보고 내용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경찰이 마치 여당이나 정부 측의 사설 선거컨설팅업체 내지 선거운동기관처럼 활동한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 이외에도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정보국) 제3항 2호는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면서 사회 전분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근에는 경찰청 정보국의 간부가 삼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노조동향 정보를 삼성 측에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³¹⁾ 이진 관련 2018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는 경찰청 한남동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함.

이 사건이나 기타 언론 기사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노조동향이 경찰청 정보국의 감시적인 활동에 의하여 수집되고, 이후 분석되더 고용노동부, 청와대 등 정부에 제공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론될 수 있다.

△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적인 경찰정보활동에 대하여 단순한 하위입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상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

30) 영포빌딩 MB 靑문건 3천여건..국정원·경찰 정치공작 정황도(연합뉴스 2018.3.20. 자)

31) 삼성 돈 받고 노조 정보 제공?..경찰 간부 수사 (KBS 뉴스 2018.6.22. 자 보도)

■ 경찰정보활동을 위한 법률상의 규정

△ 경찰청(정보국)에서 주장하는 경찰정보활동의 법률상의 근거

-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배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언급한 규정들은 경찰의 임무 내지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의 정보상의 침해적 활동을 위한 수권근거가 될 수는 없음.

△ 게다가 경찰청, 특히 정보국에서는 치안정보의 범위를 일부 상황정보(재난, 집회시위, 건물유치권 소송 분쟁 등)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통치정보의 개념으로 활용.

이러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노무현 대통령 동향파악, 4대강 반대집회자, 세월호 유족 동향파악, 좌파세력 지원배제·무력화·대응방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정보보고 문건에서 그대로 드러남.

△ 경찰청에서 경찰정보활동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률하위입법(대통령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정보국)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위 대통령령은 치안정보가 사실상(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통치정보, 정부를 위한 선거정보의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남용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적 근거(실질적 법적 근거X)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 정책정보도 관련 분야 해당 부처(또는 총리실, 청와대)에서 민주주의 하에서의 법이 정하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위험방지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경찰에 의하여 행해져서는 안됨.

△ 학문적 의미에서건 법률적 의미에서건 선진 경찰과의 비교를 통해서건 경찰이 통치정보를 수집하고 통치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정보활동은 더 이상 현대사회의 경찰직무, 임무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

즉, 현재 경찰청 정보국의 침해적 활동의 수권근거를 논하기 전에 이미 경찰청 정보국이 위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활동은 경찰직무, 임무의 범위를 명백하게 초과한 위법, 위헌적인 것으로 민주법치사회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들임.

△ 과거 입헌군주정, 독재정권 시절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경찰이 통치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대화와 토론, 공론조사, 공청회, 설문조사 등 해당 정책 주무부처(또는 국무총리실)에 의해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으로 민의가 반영되어야 하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통치정보 수집은 경찰의 직무자체로 인정될 수 없음.

△ 현재 학문적 의미에서건 법률적 의미에서건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4조가 말하는 경찰정보활동은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범죄수사 및 예방을 위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

- 단순히 4대강 집회시위, 세월호 유가족 집회, 노조집회 등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험방지를 위한 치안정보의 수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 경찰이 위험방지 업무를 하고 범죄수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이듯이 집회시위 참여자, 노조에서 집회 및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이들의 정당한 업무임.
-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시위의 경우도 경찰의 위험방지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범주와 관련된 집회의 참여인원, 이동경로, 사용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임.
- 집회시위에서 위험한 물건, 과격한 집회시위를 행한 전력이 있는 집회참여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상의 수집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범주를 넘어서서 언급한 사례처럼 세월호 유가족 언동, 4대강 반대자 언동 등에 대해서 정보수집하고 보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 따라서, 지금처럼 경찰청 정보국에 의해 왜곡, 확장해석되는 “치안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정보조직이나 정보활동은 -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을지 모르나 - 법적으로 그 임무성이 인정될 수 없음.

△ 현대 민주사회에서 경찰정보활동의 임무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하는지에 관한 사정은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과거 현재 정보경찰의 역사를 보면 금방 드러남.

■ 정보경찰의 역사적 한계 (국내)

△ 경찰청 정보국은 역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비밀(정치)경찰 후신

- 일제강점기 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기밀계)(1910.10.1. 사무분장표)
- 일제강점기 총독부 경무국³²⁾ 각 도시사 직할 경찰부의 고등경찰과³³⁾(1919)
- 미군정 경무부 관구(도)경찰청에 사찰과 유지(1946.1.16.)
- 해방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의 후신(1948.11.7. 내무부 직제)

△ 해방 뒤 미 군정은 1945.12.27. ‘국립경찰조직에 관한 건’ 으로 당시 고등경찰, 사찰과 조직을 없애기로 하였으나³⁴⁾ 이는 실현되지 못함. 즉, 여전히 관구(도)경찰청에 ‘사찰과’ 라는 직제 유지
 1946년 미군정시대 경찰기구표를 보면 경무국에 “정보과” 직제가 발견되기는 하나 민간 여론 정보수집이나 요인사찰이 아닌 범죄수사와 관련된 미국식 기준에 따른 “정보과” 로 보아야 함.
 당시 직제도 정보과는 경무국의 수사국 소속 “정보과”로 되어 있음.³⁵⁾
 현재 경찰청 수사국에도 범죄정보과가 있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음.

△ 1960년 4월30일 경찰청은 ‘대공사찰’ 외 일체의 국내 정치 사찰을 없애 겠다고 선언.
 1960년 12월31일 경찰청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에 따라 소위 민원을 야기한 경찰 간부 등 당시 경위급 이상 90% 가량의 정보경찰을 면직

△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한국 정보경찰은 중앙정보부의 지휘 아래 이승만 정권 때 처럼 또다시 전국민 사찰 기구로 전락
 심지어 1960년 4·19 이후 정보, 보안경찰 개혁 과정중 퇴직당한 정보, 보안 경찰관들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요원으로 채용되기도 함.

△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 국군 보안사령부와 긴밀히 협력, 경쟁하며 대국민 사찰, 감시

32) 1919년 8월 20일 관제개정 이후 헌병경찰제도는 폐지되고 보통경찰제로 변경. 조선총독부는 독립관청인 경무총감부와 각 도의 경무부를 폐지하고 총독부에 경무국을 신설. 지방 각도에서는 도시사가 경찰권을 직할하게 함. (이현희, 한국경찰사, 한국학술정보 2004, 113쪽 이하)

33) 이현희, 한국경찰사, 한국학술정보 2004, 114쪽.

34) 같은 시기 일본에서 미군정의 GHQ (General Headquarter =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가 일본 고등경찰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인적자원과 운용 노하우를 공안에 그대로 배속했다.

35) 이현희, 한국경찰사, 한국학술정보 2004, 162쪽.

△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동향파악, 서울시 교육감선거개입, 4대강 반대활동 감시, 세월호 유가족 감시 등 정보경찰의 악행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음에도 정보경찰 지휘관은 자신들은 몰랐다면 전면부인, 꼬리자르기 행태.

■ 외국의 정보경찰?

△ 독일의 정치경찰

- 19세기 초반 독일 연합(Deutscher Bund), 1848년 파울스키르헤(Paulskirche)의 3월 혁명 이후 독일, 1871년 비스마르크 독일제국 내 정적감시 정치경찰(Politische Polizei) 직제 존재
- 다만,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경찰청 이외에 「제국수사청」 및 「공공질서 감시 제국 위임관」을 신설하려는 노력을 통하여(실제 신설에는 실패) 주경찰의 수사 및 위험방지 업무가 정치경찰의 업무와 구분이 되는 전기를 마련
- 1933년 독일 국가사회당(나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는 억압적 정치경찰로서 경찰집행 기능과 정치정보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무소불위의 경찰기관
- 동독의 슈타지 (국가안전부) 도 마찬가지
- 2차 세계대전 독일 패망이후 미군정 점령지역에서 미군은 1946.7.1. 경찰편지를 통해 경찰(집행, 수사)과 정보기관의 분리원칙을 선언.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같은 시기에 미군정이 해방 대한민국에서 경무국에 “정보과”를 둔 것도 미국식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타당.
- 현재에도 독일의 경우 경찰 - 정보기관 분리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짐. 테러 등의 영역에서 양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법률적 조건하에 상호 협력

△ 영국과 미국의 경찰

- 영국 연방경찰인 NCA(National Crime Agency)는 범죄정보 수집, 분석에 한정된 역할. 이러한 사정은 하위 경찰서 단위 수사과 정보팀도 마찬가지.
정보기관인 MI5(영국 국내정보기관)는 경찰보다 광범위한 정보상의 권한을 가지는 대신 인신구속, 가택수색, 물건압수 등 경찰상 강제권한, 수사권한은 없음.
- 미국의 FBI도 사찰문제로 곤욕을 치룬 역사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정치사찰, 여론사찰 정보는 담당하지 않고 범죄정보만 담당
FBI의 1950,60년대 "COunter-INTElligence PROgram"(COINTELPRO) 작전은 국

내 감시, 사찰이라는 논란을 남김.

무력 또는 비폭력 조직을 포함한 시민인권운동가, 종교지도자들의 정치조직 활동에 대한 FBI의 감시 및 개입은 많은 비판을 낳았고 현재 FBI 스스로도 그런 정치적 영역의 감시활동은 하지 않으며 다만 폭력성, 범죄성이 있는 사례와 관련된 영역의 정보수집에 전념한다고 함(2018.2.22. 김경진 FBI 한국지부장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분과 발언)

미국의 경우 자치경찰도 “표준매뉴얼(CALEA)”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가 범죄행위에 한정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활동에 관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 프랑스의 정보경찰

- 현재 대한민국 정보경찰이 약방의 감초처럼 내세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정보경찰임
- 프랑스도 18 세기 말 정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운동, 단체들에 대한 감시, 대중 여론·풍문·동향파악을 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였고 19세기 중후반 제2왕정기(1852-1870)에는 내무부 장관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특별경찰위원을 둬
- 20세기 초에도 왕정복고주의, 나폴레옹주의, 무정부주의, 사회혁명론 등 공화국 정권에 대한 격렬한 정치적 긴장상태 속에서 1907년에 국립경찰 내에 일반정보반(Brigade Renseignements généraux) 설치. 명실상부한 정치경찰.

※ 그러나, 당시에는 이와 같은 격렬한 정치적 긴장이 대규모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또한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인 입헌군주정 등으로 국가의 통치권에 대해 의회통제, 시민통제에 대해 고민이 덜 되어 있던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당시 시대상에서는 경찰조직 내에 정치경찰이 아직까지 존재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임.

그러나, 국민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이 확립된 오늘날의 민주사회, 오늘날의 평화로운 집회시위와 관련된 사정이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법률적 사정과 동위에서 비교될 수는 없는 것임.

- 1937년에는 일반정보 및 행정경찰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공산당원 색출 임무도 추가적으로 맡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중 비시정부는 나치 비밀경찰과 협력하기 위해 경찰청 내 특별정보반을 신설하기도 함.
- 베르나유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 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나중에 소형 기계별에 머리를 쏘여 죽음) 시의원을 꿈꾸던 인물
- 과거 프랑스 정보업무 중 국내일반정보는 경찰청 소속 일반정보국(DCRG)이 담당하였음.
- 1994년 사회당 비밀집회내용을 파리수도경찰청 일반정보국 요원이 도청한 것이 발각되어 당시 내무장관이 파리수도경찰청 일반정보국장 및 정담당간부를 면직하면서 정당사찰할

동을 완전히 금지

- 2008년 정보조직 개혁에 따라 경찰청 소속 일반정보국(DCRG, 국내일반정보), 국토감시국(DST, 국내보안정보)를 합하여 중앙국내정보국(DCRI, 2013년 국내안보총국 DGSI로 명칭 변경)을 신설.

신설기구의 소속을 내무부장관으로 함.

다만, 기존의 일반정보³⁶⁾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산하 일반정보부국(SDIG, 2014년 경찰청 생활안전국 산하 중앙국토정보부 SCRT로 명칭변경)을 신설하여 수행하도록 함.

- 2008년 경찰청에서 일반정보국(DCRG)를 폐지한 것은 2001년 테러이후 정보조직의 통폐합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청 소속 일반 정보국(DCRG)의 정치인 불법사찰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기도 함.

△ 일본경찰

- 일본 경찰은 경비국 공안과 경비정보대책실, 경비국 외사정보부 등을 따로 두어 경비정보 및 공안·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청의 외사국에 외사정보과, 수사국에 범죄정보과를 두고 있는 구조와 하등 다를 바가 없음.
 - 즉, 경찰본연의 위험방지 집행업무·수사업무 범위 내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경찰정보수집.
- 국내일반정보는 총리실 직속의 내각정보조사실에서 담당.
- 따라서, 일본에서도 국민생활 여론, 민심 전반, 정치정보를 살피는 경찰기능은 인정되지 않음.

■ 정보경찰 개혁의 방향

△ 경찰청 정보국 폐지 및 정보경찰 개편

- 경찰청 본청 정보국 및 정보국장 직급(치안감)은 폐지하고 기회조정관(치안감) 아래에 정보심의관(경무관)을 둔다.
- 정보심의관이 담당하는 과는 2개 정도의 과로 하여
 - 1과는 상황전파 기능 및 외사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조정기능을

36) '일반정보(Information generale)' 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 (통상 도지사)에게 제공할 용도로 기관, 경제 및 사회분야 특히 폭력현상과 같은 공공질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 집중, 분석하는 임무를 의미함 (1985년 10월 2일의 데크레 제12조)

- 2과는 분석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 때 정보활동의 범위는 당연히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에 국한된다.

-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정보과는 폐지하고, 경비과 아래 정보계를 둔다.
- 정책정보기능을 전면 폐지, 집회·경비·안전사고 상황정보 중심으로 재편.

이 경우에도 집회참여자의 정부반대, 비방 언동 등 주장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경찰의 위험방지, 질서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정보수집활동에 머물러야 함.

물론,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정보도 수집 가능(이 경우 경찰서 수사과, 지방경찰청 수사부, 경찰청 수사국과 협조필요)

△ 정보경찰 개혁은 단순히 경찰 내부의 문제가 아님

- 국가정보원, 검찰 범죄정보과, 국무총리실의 정책정보 수집 임무·권한 인정문제 등 전체 국가의 안전구축구조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

△ 경찰은 경찰답게, 정보기관은 정보기관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군은 군답게

- 수사, 집행기능을 가진 경찰이 광범위한 정보경찰 보유
- 광범위한 정보기능, 예산, 비밀주의가 인정되는 국정원이 수사권 보유
- 검찰이 직접 수사 및 범죄정보과 신설, 강화
- 군대(군정보기관)에서 민간인 감시·선거개입, 군대에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재판 관할권, 군인의 군령영역이 아닌 군정 영역, 나아가 일반 사생활 영역도 군사법원법상 신분적 관할권을 이유로 균형법 적용 및 군사재판(보주기 수사, 기소, 재판 때로는 지휘관 위신을 세우기 위한 과중한 처벌, 지휘관 의중에 따라 왔다갔다 지휘관 사법)
⇒ 모두 문제있는 안전구축구조의 설계, 건축에서 나온 결과물

- 경찰정보기능의 폐지와 동시에

-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타기관 계상 비밀활동비)에 따른 비밀활동비 및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안정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국정원 예비비” 명목으로 경찰청 정보국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령받는 소위 특수활동비 (앞의 비밀활동비 + 예비비) 의 수령이 폐지되고 중단되어야.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정보비가 지급되는 한 위법적인 경찰정보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또한, 이를 빌미로 한 국가정보원의 경찰청 정보국, 외사국, 보안국 등에 대한 보안감사, 보안감찰도 즉시 중단되어야...

△ 이를 통해서만 경찰(집행, 수사 기능) - 정보기관간의 분리가 가능해져 정보 + 수사가 결합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거할 수 있음.

△ 영포빌딩에서 명확히 물증이 드러난 경찰청 정보국의 활동에 대해서도 경찰청 지휘관은 ‘본 인들은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큰 문제.

왜냐하면, 이와 같이 행정내부적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은밀하고 암묵적인 경찰정보활동에 대하여 사법에 의한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경찰청 정보국의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어둡고 음침한 국민 감시권력, 국민 사찰권력을 인정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현행 경찰청 정보국의 임무범위 및 활동방식이 유지되는 한,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정보국)는 민주주의의 바탕위에 서 있는 현행 헌법과 법제하에서 인정될 수 없는 위헌, 위법의 조항일 수밖에 없고,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배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도 위헌방지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집행 활동을 위한 범주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경찰청 정보국처럼 치안정보, 경찰청보가 사실상 통치정보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 한 관련 조문은 경찰정보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찰청 정보국

- 1과는 상황전파 기능 및 외사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조정기능을
- 2과는 분석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경찰법 제3조 제4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가 합헌, 합법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해석될 수 있음.

토론문

- 량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정보경찰 개혁 권고의 한계와 문제점

- 집회시위를 중심으로 -

랑희 상임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1. 개혁의 한계

- 정보경찰의 업무 공개와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시민사회가 정보국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이유는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부서와 역할로서 존재해왔던 것이 아니라 정보국의 업무가 사실상 권력의 통치를 유지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서를 해체·축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보경찰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활동의 결과가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정보경찰의 업무가 무엇이어서 하는지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에 대한 심층적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과 평가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업무는 비밀을 유지해야한다는 업무적 특성을 내세워 구체적으로 사회에 공개되었던 적도 없으며 사회적 통제가 이뤄진 적도 없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부터 경찰청 정보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마다 정보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인 경찰은 국내 최대의 '정보기관'이다. 그리고 수직적 명령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권력에 종속해 독립성이 취약한 기구이다. 즉 의도에 따라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권력작용으로 확대되며, 그 활동은 체계적이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무엇을 위해 수집하고 이 정보를 근거로 반영된 결과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 정책정보 업무는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치안정보' 개념을 폐기하고 정보경찰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개혁의 기본적인 출발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를 현 정부에서 유지한다니 우려가 크다. 그동안 치안정보와 정책정보

가 명확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국의 3,400여명 의 정보경찰이 치안을 이유로, 여론 파악을 이유로 개인, 집단, 기관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을 훑어내는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정보로 생산했다. ‘치안정보’ 개념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정보’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얼마든지 수집될 수 있다.

특히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보 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청의 정책정보 수집·분석 등이 중단될 경우 정부의 기능수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는 면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폐해가 컸기 때문에 금지된 것인데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해왔던 경찰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적폐와 단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력에 취약한 조직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겠다는 것은 정부는 정보경찰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정보경찰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정부를 위해 정보수집에 매진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높다. 우리는 공공의 안전이 정권의 안전으로 둔갑하는 경험을 수없이 했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력과 경찰이 유착되는 구조를 끊어내야만 한다.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굳이 정보경찰의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 기능별 분산은 반성적 업무평가로부터 업무규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

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정보활동 중 각 기능별로 분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분산하는 권고를 냈다. 단일 지휘 계통을 통해 각종 정보보고를 취합하고 보고 문건을 생산하는 조직 체계가 유지되는 한, 언젠든 정치권력에 의한 오남용이 벌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분산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업무가 그대로인 채 역할만 나뉘어서 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개혁이다.

집회·시위 관련 업무는 경비업무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보국에서 해왔던 집회·시위 관련 업무가 그대로 옮겨져는 안 된다. 업무 이관 이전에 정보국에서 해왔던 업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 속에서 새롭게 업무를 규정해야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조, 학원 일각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파악하고 이런 정보의 축적물이 다시 집회·시위 관련 업무에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2. 집회·시위 관련 업무의 문제

보통 집회현장에서 마주치는 경찰은 경비경찰이지만 실상 집회·시위는 접수에서 해산까지 정보경찰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회신고 접수,(신고과정에서 주최측에게 장소, 행진경로, 신고물품 등 여러 가지 개입을 함.) 금지·제한통고, 집회 장소 검토, 집회 현장 관리와 개입, 채증과 판독까지 정보경찰의 업무다. 뿐만 아니라 집회관리, 위험 상황 대비라는 명목으로 사전정보, 집회 현장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집회와 관련된 정보 수집은 상시적인 치안정보와 연동되고

결합됨으로써 특정 인물에 대한 사찰, 경찰의 편향적인 평가 등의 문제를 만든다. 집회 관련 업무와 치안정보를 다루는 업무가 같은 부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이런 정보들의 결합과 판단이 가능하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① 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7., 1999.12.28.>
 1. 정보경찰(情報警察)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삭제 <2004.12.31.>
- ⑤ 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⑥ 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31조(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 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③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2013.5.8.>
 1. 정책정보 및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삭제 <2013.5.8.>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보2과장은 경제·노동·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정보상황보고는 집회와 관련된 상황들을 수 십분 단위로 기록한 것으로 해당집회로 기소가 되면

이런 기록들이 증거로 사용된다. 집회 전반에 대한 기록이 통째로 증거로 활용되면 기소된 피의자가 관여되지 않은 상황까지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 기록이 객관적인 사실 서술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집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적 상황이 종종 경찰로부터 기인하지만 정보상황보고는 경찰의 시각으로 일방적으로 기술되고 경찰의 행위는 드러나지 않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의 발언들이 일일이 기록되고 집회에 동원된 차량(방송차, 무대설치를 위한 차량, 타지역참가자들을 위한 버스)번호도 기록된다.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편향적 분석과 정보로 드러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가 집회마다 생산되고 수사과 재판 기록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적으로 참가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집회와 관련한 업무가 그대로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것은 개혁적 조치가 될 수 없다. 업무의 분산 이전에 철저한 업무 분석과 반성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 편향적 정보와 분석, 용어 사용

※ 집회참관 반응(임 [redacted] 코레일넥트웍스 감사(천경인사) 등 2명, 강동궤)

- 18:40 세종문화회관 앞 여성단체 기자회견 · 19:00 청계광장 입구 여학생들의 퍼포먼스 · 20:00 청계광장 한대련 등 집회 참관
- 반응 : 서민들은 월 120~13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등록금이 너무 부담이 되니 인하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 한다.

요즈음의 집회 시위문화가 저렇게(여학생들의 퍼포먼스) 변화된 것을 보니 신선한 느낌이다. 청계광장에서 많은 인원이 집결 하였지만 차분하게 집회만 개최한다면 다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진을 병자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강력하게 제지하여야 한다.

반값등록금집회(2011.6.10.) 정보상황보고

정 보 상 황 보 고

서울 종로 재야 - 전직원 05. 17 10:48

제 목 : 세월호 원탁회의 등 10명, 10:30현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 집회' 무대설치 등으로 준비중(1보)

0 세월호 원탁회의(공동위원장 장 [redacted])에서는

- NL·PD 계파를 초월 '원탁회의' 구성(5.13), 물밑으로 汎좌파 역량을 집중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여당 비난 여론을 모두 쏟아내는 분수령으로서, 대규모 집중 집회 및 행진 추진
- 10:30현재 同 회원 등 10명(09:40경 도착),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 집회'를 무대설치(10:00경 설치시작)등으로 준비중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 집회(2014.5.17.) 정보상황보고

문 신부 폭력 후 소강상태 시 등단발언 "김진숙을 죽일 것인가, 육지가 없으면 바다로 가자" 등 선동

- 영도지역 상인, "완전히 무법천지다. 한진 정리해고와 김진숙에 대해 평소 걱정스런 마음이었는데 이런식이면 국민들이 지지하겠는가"
- YTN, 부산일보 등 지역언론, "부산역에서 행진 출발에서부터 경찰의 인내 대처가 돋보였다. 시위 참가자의 차로 점거 대치는 있을 수 없는 처사다 특히 양당 국회의원이 선두에 서서 선동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2차 희망버스(2011.7.9.~10) 정보상황보고

서울 용산·7계 사회

1. 9 19:3

계 목 : 유가족 등 300명, 18:50현재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으로 출발(2,738보)

용산 화재사고 장례식 관련 상황 -

0 18:50 현재

- 용산 철거민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 등 300명(선두차 1대, 운구차 5대, 관광 버스 10대), 장지인 마석 모란공원으로 출발
- 남일당에는 약 30명이 남아서 분양중이며, 분양 후 해산할 예정
- 한편, 상습시위꾼 및 범대위 관계자는 "금일 노제가 종료되면 남일당 분향소 분향 후 현장에서 바로 해산할 것이며 가투 계획 등은 일체 없다"는 반응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장례식(2010.1.9.) 정보상황보고

-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수집

- 민주노총 간부(추정) 1명, 광화문驛 하차 後 3번 출구 → 대한문 방면 이동시 경력이 차단하자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게재(15:55경)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2012.6.16.) 정보상황보고

■ 향후 조치 계획

- 인물·채증 자료 및 간접 피해 사례 등을 종합, 입체적·종합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법조치 확행

※ 교통정체 5건, 소음피해 2건에 대한 시민피해사항 진술서 확보 / 서울청 신고접수는 종합교통정보센터 2건, 112신고 13건

V. 언론 반응

- KBS(이 [redacted] 사회부장), 주말 도심을 휘젓는 불법집회는 안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말 도심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 SBS(정 [redacted] 기자), 진보언론과 공동 주최한 행사가 불법집회로 진행, 주말 스케치 시간에 행진관련 부분 언급을 검토하겠다
- 경향신문(김 [redacted] 기자), 경찰 입장은 이해하나, 평화적 개최를 약속했음에도 경찰이 협조하지 않아 아쉽다, 시민들도 쌍용차 문제를 알 수 있도록 행사 전반에 대해 면밀히 보도 예정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2012.6.16.) 정보상황보고

<명동성당>

- 유가족 30명 명동성당 정문 앞 초소에서 수배자들과 상면(11:40) 후 운구차량으로 이동중
- 박래군 등 수배자 3명과 방문객 4명(남1, 여3), 총 7명 영안실 內로 입실

<대화내용>

- 남 [redacted] : 가신분들을 영원히 가슴에 묻겠다. 이 장례식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재개발 정책에 대한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 박 [redacted] : 참석하지 못하는 호상들을 위해서 장례위원회 계신분들은 마지막 길을 잘 보내달라. 그동안 유족분들 고생많았다
- 오 [redacted] : 우리 3사람이 나가지 못해 그간 유족들을 많이 고생시켰다.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보내달라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장례식(2010.1.9.) 정보상황보고

- 특정인물에 대한 감시

□ 관련 첩보

- <만민공동회> 14:00 BH부근 동시다발 1인 시위(이 [redacted] 페이스북 '청와대를 포위하자' 게시) → 15:00 집회(장소는 현장 공지<금지된 6개 장소>) → 16:00 민주노총 집회 → 17:30 행진時 후미대열을 보신각 반대방향 롯데백 쪽으로 이끌어 광화문 방면 진출 시도 → 24:00 만민공동회 결의마당

□ 만민공동회 관련 상황

- 데모당 6명, 내자R·경북구역 등 계속 이동하며 1인 시위 中
 ⇨ 정보관 밀착 이동 추수 中

민주노총 총궐기, 시국대회(2014.6.28.) 정보상황보고

서울 정보(노정)

2014. 6. 28(土)

민주노총, 6.28 '2차 시국대회' 상황(8보, 16:50 현재)

□ 청계광장

- 2,000명으로 증가, 16:10부터 '노동자 총궐기대회' 진행 中
 - ※ 김재연·김미희(통) 의원 참석 ⇨ 현장협력관 운용 中
 - ※ 인원감소 이유 : 전공노 및 전농 다수가 본집회 불참 의사를 밝히는데다, 삼성전자 서비스노조·희망연대 및 시민·재야단체 등이 불참하며 집회인원 감소
- <준비물>
 - 플래카드 :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멈추자, 책임 무능 정권 퇴진 세월호 진상 규명 민영화 규제 완화 폐기, 살인적 노동탄압 분쇄 반 노동정책 폐기 열사정신 계승 / 깃발 : 데모당, 노동자행동(청계북로)
- 한편, 전장연은 금일 민주노총 집회 및 시국대회 참석치 않기로 최종 결정
 - ※ 전장연 박 [redacted] 대표는 금일 18:00 연신내 메가박스 '노들야학 북 콘서트' 참석 예정

민주노총 총궐기, 시국대회(2014.6.28.) 정보상황보고

서울 종로 노정 - 전직원
 제 목 : 만민공동회 5명 증가, 18:25 현재 삼청동 현대미술관 앞 '610 만민 공동회' 자진해산 요청(18:11)하자 동십자 이동, 햇불시민 연대김 [redacted] 커피숍 대기중 (3보)

0. 만민공동회 (공동대표 정 [redacted])에서는
- 6.10 항쟁을 컨셉으로, 종교·시민·장투사업장·문화계 등 PD계 諸 단체 '총궐기 형태' 폭넓은 연대를 획책
 - 18:00 현재 同 회원 등 3명(남2,여1), 삼청동 현대미술관 앞 '610 만민 공동회' 대기중 ⇒ 경력 차단중
 ※ 깃발 또는 플래카드 추정 소지중
 - 18:25 현재 同 회원 등 3명(남2,여1), 삼청동 현대미술관 앞에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산치 않아 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44기동대장이 핸드 마이크 이용 자진해산 요청(18:11경) 후 동회원 5명으로 증가 동십자 방면으로 유도 이동중
 ⇒ 햇불시민 연대 김 [redacted] 은 국립현대미술관 부근 커피숍 대기중

6·10 청와대 만민대회(2014.6.10.)정보상황보고

- 기타

(서울 정보2)

要 保安

2014. 6. 9 (月)

BH 주변 집회신고(萬人대회) 조치 검토

□ 관련 동향

- 그간 3차례(5.8<450> · 5.18<400> · 5.30<100>) 만민공동회 집회가 PD계의 투쟁성 과시에 성과가 있었다고 自評하는 가운데,
 - 세월호 이슈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6·10 민주항쟁을 컨셉으로, 명칭을 '萬人대회'로 바꾸고, BH 주변 '집회' 추진
- SNS上 '행동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 공지
 - ⇒ 6.10(火) 청운동사무소 등 BH 주변 59개소 신고(6.7 20:50)

신고 내용

- 주최자 : █████(범국민연대모임) · █████(알바연대) · █████(한국작가회의) · █████(햇불시민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56명
 ※ 59개소에 각 1명씩 명의(단, █████만 4개소 신고)
- 집회명 : 세월호 추모, 관권부정선거 규탄, 박○○ 퇴진 · 규탄 등
- 인 원 : 10~500명 / 시 간 : 6.10(火) 17:00~24:00

- 청년좌파(대표 █████), SNS上 '입감을 결의(41명), 청와대로 행진' 공지
 - ※ PD계 내부에서는 SNS공지 · 집회신고까지 한 만큼, BH 주변에 사전 경찰대비가 예상, 경찰 몰래 연행을 각오한 기습시위 전개 주장(說)

□ 조치 검토

- 시민열린마당 앞 인도(100명)를 제외하면 모두 광화문R 以北으로, 경복궁을 에워싸는 모양새로 집회신고
 - 인원이 소수(10명)인 장소가 40개소에 달하지만, 장소들을 연결하면 사실상 행진도 가능 ⇒ 모두 금지(§8③주거지역 · §12 주요도로)
- 정보라인 총가동, 예고철폐 입수 및 불법 엄정대응 강력경고

6·10 청와대 만민대회(2014.6.10.) 수사보고

□ **연행자 관련**

○ 충청로R → 의주R로 이동 중 경력을 폭행한 피의자 2명 / 서소문PB 건너편
해산명령 불이행자 2명 ⇨ 총 4명(男), 수사팀 지능팀 조사 중(18:35~)

· 공무집행방해 혐의 2명 : 경찰13기동대 길정진 순경 등 2명을 깃대로 폭력행사 및
가슴을 밀쳐 채증장비인 캠코더 손괴, 손가락 부상

· 연행자 인적사항 : 권 (63.2.2생), 나머지 3명 신원확인 중

□□ “연행되고 있는데 경찰에 맞아서 이가 부러졌다”라는 트위터상 글 게재 ⇨ 연행자
확인한 바 부상자 없음

□ **수서쪽 연행자 관련 동향 ⇨ 면회 대기자 없음**

○ 연행자 4명 중 1명, 지능팀내 조사 대기 중 / 여타 3명, 병원 진료 중

- 권 (63생, 치아·가슴), 가슴 통증 관련 경찰병원내 치료 대기 중(19:30~)

- 김 (75생, 무릎·눈), 강남 영동세브란스병원 진료 ⇨ 안구결막하 출혈로
진단(1주일가량 안약 투여 필요) 後 약을 받기 위해 병원 대기 중

- 신 (21세, 무릎), 무릎 고통 호소, 경찰병원 치료차 이동 중(21:40~)

○ 범무법인 LOG소속 이 변호사, 집견(19:45~21:40) 및 향린교회 임
목사 등 10명, 면회(20:55~21:40) 後 해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 (2012.6.16.) 정보상황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정보경찰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문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 례》

- I. 서: 정보경찰, 무엇이 문제인가
- II. 경찰의 정보활동과 정보경찰
 - 1. 정보의 의미와 경찰활동에서 정보의 중요성
 - 2. 정보의 흐름과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수집활동의 불가피성
 - 3. 경찰의 권한 강화와 정보경찰에 대한 우려
- III. 치안정보 개념의 폐기에 대한 의견
 - 1. 치안정보 또는 경찰정보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2.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이외에 치안정보 개념의 폐기가 필요한가?
 - 3. 치안정보에 대한 대체물이 적절한가?
- IV. 경찰청 정보기능 재편과 정보국 폐지에 대한 의견
 - 1. 경찰정보는 경찰을 위한 것인가? 정부를 위한 것인가?
 - 2. 경찰청 정보기능 재편 이후의 경찰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 3. 정보 기능이 없는 정부는 없다. 그러면 경찰이 담당하던 정책정보는 어디로 이관하자는 것인가?
- V. 정보활동의 원칙에 대한 의견
 - 1. 정보수집활동시 신분과 정보수집목적의 공개
 - 2. 정보활동의 결과물 보관
 - 3. 정보실명제와 정보이력제
 - 4. 비밀시스템 구축·운영의 금지
- VI. 결론: 개혁에 찬성하나, 방법의 합리성에는 속고가 필요!

I. 서: 정보경찰, 무엇이 문제인가

- 정보경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묵은 것이다. 발제자들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며,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개혁의 방향 내지 방법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현 정부에 들어와서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논의와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논의는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개혁의 방향 내지 방법에 대해 이견을 갖게 되는 것도 유사하다.
- 사실, 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들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담당하는 어떤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 오남용의 문제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한 오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권한의 행사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작용의 효율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것이다.
- 이런 점에서 정보경찰 개혁의 문제도,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되, 경찰의 정보활동 자체를 전면 부인할 수 없는 바에야 기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 경찰의 정보활동과 정보경찰

1. 정보의 의미와 경찰활동에서 정보의 중요성

-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 인간의 행동 내지 판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보라고 할 정도로 정보의 활용도는 높고,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적 영역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경찰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 경찰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치안 및 수사의 경우에도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효율성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찰활동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2. 정보의 흐름과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수집활동의 불가피성

- 경찰활동과 관련된 정보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의 교통사고나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에서부터 범죄발생의 시간, 장소, 피해자의 신원 및 활동과 관련한 정보, 나아가 특정 산업분야의 경기변화에 따른 범죄발생 빈도의 증감 등도 모두 중요한 정보가 된다.
-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경찰작용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경찰이 이러한 정보의 축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또한 경찰작용이 요구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를 얻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동향 분석 등의 정보는 사건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경찰의 권한 강화와 정보경찰에 대한 우려

- 최근 정보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첫째, 과거 경찰의 사찰행위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다. 정치사찰, 학원사찰 등에 과거의 국가정보기관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 또한 일조했던 점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이다.
- 둘째, 최근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하여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강력해진 경찰권이 오남용될 것을 두려워하여 정보경찰의 약화 내지 해체가 주장되는 것이다.
- 셋째, 국정원의 국내정보기능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논의와 관련하여 정보경찰 자체가 비대화되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보경찰을 약화 또는 해체하고, 국정원에서 이관되는 권한은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우려들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이 합리적인지에 있다. 자칫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에 오히려 수사력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Ⅲ. 치안정보 개념의 폐기에 대한 의견

1. 치안정보 또는 경찰정보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정보경찰 개혁권고안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치안’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할 경우에 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용어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용어란 특정한 사실이나 행위 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용어를 폐기한다고 하여 사실이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실이나 행위가 사라질 때, 그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일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 그러므로 단지 법률 조항에서 용어를 삭제한다고 해서, 치안정보 또는 경찰정보로서 설명되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학계나 언론에서 이러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마치 법률상 성립되지 않는 ‘1인시위’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2.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이외에 치안정보 개념의 폐기가 필요한가?

-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이외에 치안정보 또는 경찰정보 개념의 폐기가 꼭 필요한가에 관한 것이다. 경찰의 정보활동에 있어서 권한 오남용이 문제가 된 바 있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공감한다는 점을 말한 바 있지만, 과연 치안정보 개념의 폐기가 정보활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 권고안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나, 그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곧 치안정보 개념의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수많은 법령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 권고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만, 그 최소한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경찰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범위와 개혁위에서 생각한 최소한의 범위도 또 다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어의 폐기보다는 용어의 구체화 및 과도한 정보활동에 통제가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3. 치안정보에 대한 대체물이 적절한가?

- 권고안에 따르면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 대체물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공안녕 등의 개념도 일종의 불확정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시금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치안정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발제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찰 스스로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계기로 (치안정보 개념 폐기 및) 새로운 경찰정보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치안정보 개념의 폐기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 만약 ‘치안정보’라는 용어의 어감이 문제라면 이를 ‘경찰정보’ 등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나은 대안일 것으로 보인다.

IV. 경찰청 정보기능 재편과 정보국 폐지에 대한 의견

1. 경찰정보는 경찰을 위한 것인가? 정부를 위한 것인가?

- 경찰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정보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경찰 내의 정보담당 부서, 이른바 정보경찰의 역할은 이와 구분되어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 이런 관점에서 -발제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정보경찰의 기능을 분야별로 해체하여 각기 경찰 내의 다른 부서 또는 정부 내의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권고안에서는 정보경찰의 사실상 해체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경찰의 해체가 바람직한 것인지, 정보경찰의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교·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경찰정보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 문제는 ‘경찰’정보의 문제로만 한정하여 미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보면서 이를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지를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의 문제로만 보고,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였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경찰청 정보기능 재편 이후의 경찰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 권고안에 나타난 경찰청 정보기능의 재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의 하나는 이러한 재편 이후에 경찰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되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청 정보기능의 재편 이후에 수사기간이 길어지거나 범인 검거율이 낮아지는 등 수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기능 재편에 따른 득실 문제를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정보경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기능 재편의 결과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정보기능의 재편에 대해서 재고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사후에 교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정보경찰의 기능을 경찰청 내부의 다른 부서, 또는 정부 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경우의 득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권고안에서는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를 인사혁신처 등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과연 인사혁신처의 인력이 이를 담당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다.

3. 정보 기능이 없는 정부는 없다. 그러면 경찰이 담당하던 정책정보는 어디로 이관하자는 것인가?

- 권고안에서는 경찰청의 정책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문을 경찰청에 이관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입장이었는데, 이 문제와의 충돌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권고안에서는 다른 정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전제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 정보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구성할 경우에는 제2의 국정원이 될 우려가 있을 것이며, 검찰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경우에도 검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관이 이를 담당하기에 적절한가?

V. 정보활동의 원칙에 대한 의견

1. 정보수집활동시 신분과 정보수집목적의 공개

- 정보수집활동과 관련하여 신분과 정보수집 목적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통제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 그러나 거꾸로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이를 과연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 예컨대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공개할 경우에는 정보의 의미가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향후 정보의 수집이 어려워지거나 정보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감사원이나 국회 등 통제기관에 대해서만 공개할 경우에는 통제의 의미가 약화된다.
- 결국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공개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개의 원칙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정보활동의 결과물 보관

- 열람 후 파기하는 방식 대신에 정보활동의 결과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제는 결과물의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칫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근 은행 등에서 문제되고 있는 금융정보의 유출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마다 축적되는 정보활동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며, 이를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정보실명제와 정보이력제

- 경찰정보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정보실명제, 정보이력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찰정보 수집, 분석, 배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과연 전혀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권고안에 따라 경찰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에서 정책정보가 배제될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실명제와 정보이력제가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예컨대 수사정보의 경우 수사의 진행 중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의 다른 경찰작용(예컨대 유흥업소의 단속 등)에 대해서도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 결국 정보실명제, 정보이력제의 도입이란 경찰작용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인 정리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현재에도 이러한 부분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나 의문이 든다.

4. 비밀시스템 구축·운영의 금지

- 과거의 왜곡된 정보활동에 대한 경험으로 인하여 밀실에서의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보활동의 성격상 그 비밀의 유지가 중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 특히 수사정보는 보안의 유지가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를 어떤 정도로까지 공개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사정보의 공개는 수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인권 측면에서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 물론 경찰정보의 수집 및 축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숨기는 비밀시스템을 금지하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이 자칫 모든 경찰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VI. 결론: 개혁에 찬성하나, 방법의 합리성에는 속고가 필요!

- 검찰이건 경찰이건, 아니 어느 국가기관이건 개혁의 필요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개혁의 요구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 그러나 목적의 정당성이 곧 수단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개혁이라는 방향에 찬성하는 것과 구체적인 개혁의 방법 내지 방식에 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경찰의 개혁에 대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찬성하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물론 전문가들이 장기간 심사숙고한 결과에 대해 짧은 시간의 검토를 통해 이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점도 적지 않으나, 어깨너머로 보면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짧은 소견을 마무리한다.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정보경찰 개혁방안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을 중심으로-

오 병 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1. 들어가며

- 이 토론회는 정보경찰 개혁방안을 다루고 있음. 구체적인 논의 소재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2018.4.27,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소위원회, 이하 “정보경찰개혁권고안” 또는 “권고안”)이라고 판단됨.
 - 앞의 4개의 발제문³⁷⁾ 중 2개는 ① 이 권고안의 내용(양홍석)과 ② 권고안의 이행계획(경찰청)에 대한 것임. 또한 나머지 2개도 ③ 종래 정보경찰 현황(오민애)와 ④ 정보경찰 관련 법제의 현황(박병욱) 등도 이 권고안이 갖는 의미, 한계, 대안 등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됨.
- 이하에서는 위 권고안을 중심으로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함.

2.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 내용과 그 의미

-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 내용
 -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① ‘치안정보’ 개념을 폐기하고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 ② 경찰의 각 기능(생활안전, 수사, 사이버안전, 교통, 경비, 보안, 외사, 공공안녕 등)별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 범위로 경찰 정보활동 제한, ③ 경찰의 각 기능별 정보활동의 적법성, 적정성에 대한 실효적 통제: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 감사,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 사후 공개시 시민감시기구의 통제 등임(권고안, 8면).

37) 이하에서는 발제자 이름과 해당 발표문상의 면수를 인용함. 또한 존칭 및 경어체 생략함.

- 이에 따라, 경찰청은 ① 정보국 기능 재편, ② 민간시설 출입 중지, 기구·인력 축소, ③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④ 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음(경찰청, 1면 이하).

-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 의미

- 정보경찰 개혁방안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던 정보경찰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정면으로 다룬 것임. 이는 기존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특히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확인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큰 성과라고 판단됨.
- 쟁점은 그것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일 것임. 즉, ① 이러한 개혁적 조치들로 인해 과거와 같은 정보경찰의 폐해가 근절될 수 있는가라는 실효성의 측면과 ② 이 조치들이 장래에 상황 변화에 따라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수 있는 비가역적인(irreversible)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됨.

3. 개별적 쟁점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제언

- 정보국 폐지가 필요함.

- 정보경찰개혁권고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보국 폐지와 정보경찰 인력의 축소 및 재배치(권고안, 9면)라고 생각됨.
- 정보경찰, 정보국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점
 - 권고안에서도 확인되고 발표문 중에서도 나타나는 바³⁸⁾와 같이, 정보경찰, 정보국의 존재는 경찰 본연의 임무와 거리가 있음.
 - 정보경찰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는 경찰의 다른 부서(예컨대, 대외협력, 집회·시위 관련 업무의 경우, 경비 등으로 이관)나 다른 행정기관(신원조사의 경우, 인사혁신처 등에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임(양홍석, 3면 이하).
 -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정보·SRI의 경우이나,³⁹⁾ 국가정책 결정·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경

38) 이에 관한 지적으로는, “학문적 의미에서건 법률적 의미에서건 선진 경찰과의 비교를 통해서건 경찰이 통치정보를 수집하고 통치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정보활동은 더 이상 현대사회의 경찰직무, 임무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박병욱, 4면)

39) “정책정보, SRI는 청와대, 정부부처 등이 수요자이고, 경찰청의 경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나, “과거 정부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경찰청이 수행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보 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청의 정책정보 수집·분석 등이 중단될 경우 정부의 기능수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된다는 점에서 당초의 “현 정부 임기내 조정으로 후퇴”함(양홍석, 3-4면 참조).

찰을 통해서 획득하겠다는 발상은 권위주의적 국가관의 산물로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봄.

- 경찰의 정보국은 시민사회와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여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과 관련한 비밀정보를 수집하는 일방향적 접근방식은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임. 또한 정보경찰의 문제점이 확인된 사례들(오민애, 5면 이하)도 대부분 이와 관련된 것임.
-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방안
 -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어려움
 - 과거 국가정보원의 국내파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경찰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 있음.
 - 일단 정보경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 언론의 보도나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정보들이 많았음(오민애, 1면)은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줌.
 - 또한 국회에 의한 정보경찰의 통제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여기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공개주의와 투명성의 원칙’(권고안, 7면)을 천명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원칙을 실현할 것인가라고 생각됨.
 - 정보경찰 통제의 관점
 - 권고안은 ‘정보활동의 비밀주의’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권고안, 9-10면).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 권고내용은 경찰 전반의 정보활동 통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봄. 일반적인 정보활동의 통제 문제와 정보경찰 내지 정보국에 대한 통제문제를 구별할 때, 후자인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 종래의 정보경찰 통제의 논의는 ‘정책정보’의 공급처인 경찰, 정보국에 초점을 맞춘 것임.⁴⁰⁾ 또한 경찰의 내부적 통제(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 감사, 경찰위원회의 통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만으로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음.
 - 실효적인 정보경찰 통제를 위해 과감한 외부적 통제, 민주적 통제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40) 예컨대, “경찰관이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공개하고,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권고안, 10면)고 하고 있는데,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보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정보활동에 대한 '수요 측면의 통제'

- 정보활동의 '공급 측면의 통제'와 '수요 측면의 통제'를 나누어 볼 수 있음. 권고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자, 즉 '공급 측면의 통제'로서 정보경찰 활동을 규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 경찰의 불법적인 정보활동은 이를 요구하는 수요자(청와대 민정·정무라인 등)와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임.
- 소위 '경찰정보보고'⁴¹⁾의 동기·사유·내용·형태 등에 대한 주기적인 대국민 공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소위 '통치정보'의 형태도 정보요구와 그 답신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그 내용, 회수, 시기 등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의 성격상 대국민 공개가 어려운 사안인 경우(예컨대, "국가안보 및 시민의 생명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매우 특별한 경우", 권고안, 10면), 적어도 국회 상임위(정보위, 행안위 등)에는 공개하도록 하여야 함.
- 이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보요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불필요하거나 불법한 정보활동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형사처벌규정 신설의 의미

- 일차적으로 불법한 정보활동에 대한 입법적 거부, 법적인 금지행위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봄. 또한 특히 불법 정보활동에 대한 개인적 불이익을 명시함으로써 경찰관 개인 차원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음.
- 나아가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는 표지와 같은 추상적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법적 판단이 축적됨으로써 -행정법적 통제와 별개로- 그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행위유형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며 국가정보원법상 처벌규정이 모델로서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됨.⁴²⁾

41) 그 예로는 박병욱, 2면 참조.

42)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 도입에 대한 소견

- ‘치안정보’ 개념의 폐지는 현시점에서 경찰이 고수하고 있는 기존 관념·관점에 대한 ‘입법적 부정’으로서, - 즉, ‘치안정보’ 개념에서 정보경찰의 활동영역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는 의미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음.

• ‘치안정보’는 독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찰이 취급하는 정보’에 가깝고 그렇다면 ‘경찰활동’에 종속하는 개념일 것임. 그렇다면 문제는 ‘치안정보’ 개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정보’를 포함시키려는 것이 문제라고 봄.

• 다시 말하면, ‘치안’이라는 표현이 없어진다고 해서-그것이 봉건적·권위적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

-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래 ‘치안정보’로 다루고 싶었던- 경찰의 ‘정책정보’에 대한 ‘직

-
-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受診))와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등)와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수진, 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접적'인 통제임.

-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기로 한다고 하나, 향후 운용과정에서 다시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정책정보'를 포함시킬 여지는 있음.
 - 이것이 종래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던 정보경찰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면서 정당화하는 이른바 '역설적 법제화'(paradoxe Verrechtlichung)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
 -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조직차원의 욕구와 수요를 차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해석을 통해 다시 '정책정보' 포함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이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보활동 수권 규정"(경찰청, 3면)은 이는 "개별 기능별 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이어야 함(권고안, 9면)은 당연함.
- 여기에 추가하여 - 불완전하기는 하나 - 입법적으로 경찰이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소극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개별적인 정보활동에 관하여 수권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현재의 제도적 의미의 경찰만이 하는 것/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면 좋을 것임.
 - 따라서 정보활동의 범위를 '경찰의 개별 기능적 임무범위 내'에 한정하는 취지도 함께 명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책정보'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그 위험방지·수사와 무관한 '정책정보' 수집제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나오며: 정보경찰에 대한 관점의 전환

- 종래 정보경찰, 특히 정책정보와 관련된 정보경찰의 활동은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개별적 정보수집 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대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⁴³⁾
- 따라서 기존 정보경찰의 존재나 기능을 전제로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보경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43) 권고안의 설명, 즉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3호)는 정부 차원의 정책정보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관련한 업무의 이관·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진행된다.”(권고안, 8-9면)는 것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됨.

- 정보경찰의 필요성 여부는 정보경찰, 정보국의 존재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국가기구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관점, 정보경찰에 없는 경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 국정원, 검찰, 군대(군정보기관) 등의 잘못된 관행은 “모두 문제 있는 안전구축구조의 설계, 건축에서 나온 결과물”(박병욱, 10면)이라는 지적은 정확한 것임.
- 정보국의 해소 문제는 민주국가 전체의 ‘안전구축구조’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발달한 부분을 도려내고 정상적인 국가조직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임.⁴⁴⁾

44) 같은 취지: “과거 입헌군주정, 독재정권 시절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경찰이 통치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대화와 토론, 공론조사, 공정회, 설문조사 등 해당 정책 주무부처(또는 국무총리실)에 의해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으로 민의가 반영되어야 하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통치정보 수집은 경찰의 직무자체로 인정될 수 없음.”(박병욱, 4면)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발 행 일 2018년 7월
발 행 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전화 : 02) 2125-9821
팩스 : 02) 2125-0918
<http://www.humanrights.go.kr>
인 쇄 처 리드릭 (02-2269-1919)
I S B N 978-89-6114-631-9 9335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인권정책과
TEL. (02)2125-9821 FAX. 02) 2125-9718 www.humanrights.go.kr

ISBN : 978-89-6114-631-9 93350